

공 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7-1012호

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

영등포구고시 제2010-1호(2010. 1. 7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영등포구고시 제 2017-33호(2017. 4. 27.)로 준공인가 고시된 “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”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7월 13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사 업 명: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위 치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39번지 일대 (93,728.6㎡)
3. 사업시행자: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선돈)
4. 재결대상 물건조서: 신길동 3134-1번지 (세부조서는 열람장소 비치)
5. 열람기간: 2017. 7. 13. ~ 7. 28.
6. 열람내용: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
7. 열람장소: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
8. 기 타
 - 가) 관계서류는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.
 - 나)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영등포구 도시계획과(☎ 2670-3527)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